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7.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목 차

제1편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국가의 책무	1
제4조 특별시의 책무	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제2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운영	2
제1장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2
제6조 특별시의 설치	2
제7조 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3
제8조 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 등에 관한 특례	3
제9조 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3
제2장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4
제1절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4
제10조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4
제11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5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 추진	5
제12조 규제자유화 추진	5

제13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6
제14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6
제15조 자료의 제출	7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7
제16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기준	7
제17조 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8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8
제4절 광역생활권의 지정 및 운영	9
제19조 광역생활권 지정	9
제20조 광역생활권의 운영	9

제3편 자치권의 강화 **10**

제1장 지방의회 **10**

제21조 조례	10
제22조 특별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10
제23조 경비	10
제24조 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11
제25조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11
제26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11

제2장 자치행정 **11**

제1절 자치조직	12
제27조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12
제28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12
제29조 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12

제2절 인사운영	13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13
제31조 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13
제32조 국가와 특별시 간 인사교류	14
제33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15
제34조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15
제3절 일반행정	15
제35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15
제36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16
제4절 주민참여 확대	16
제37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16
제38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16
제3장 자치재정	16
제39조 국가의 재정지원	16
제40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17
제41조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17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18
제43조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18
제44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18
제45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18
제46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전충남특별시 계정 설치	19
제47조 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19
제48조 균형발전기금 설치 운용	19

제49조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19
제50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20
제51조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20
제52조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20
제5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20
제4장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21
제54조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	21
제55조 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21
제56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22
제57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22
제58조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22
제59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23
제60조 영재학교의 설립·운영	23
제61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24
제62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	25
제63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25
제64조 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26
제65조 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27
제66조 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27
제67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	28
제68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28
제5장 감사위원회	28
제69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28

제70조 감사위원장 29

제71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29

제72조 자치감사계획 29

제73조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30

제74조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30

제75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31

제76조 정치운동의 금지 31

제77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 31

제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32

제1장 경제과학수도 개발에 관한 계획 32

제1절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2

 제78조 기본계획의 수립 32

 제79조 기본계획의 확정 34

 제80조 기본계획심의회 34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35

 제81조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35

 제82조 기초조사 35

 제83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36

 제84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36

 제85조 인·허가 등의 의제 37

 제86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41

 제87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42

 제88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43

 제89조 조세의 감면 43

제90조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44
제91조 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44
제92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44
제3절 투자유치 활성화	44
제9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44
제9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45
제95조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45
제96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46
제97조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47
제98조 부담금 등의 감면	47
제99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47
제2장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	47
제100조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7
제101조 중앙행정기관별 지원계획	49
제102조 특별시 연차별 실시계획	49
제103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50
제10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에 관한 특례	50
제105조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50
제106조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	51
제107조 과학기술발전기금의 지원	52
제108조 외국인 과학기술인재 특례	52
제109조 실증을 위한 규제완화	52
제110조 과학기술산업 등의 기반 조성	52
제111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52

제112조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	53
제113조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53
제114조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특례	53
제115조 연구개발특구 재투자 특례	53
제3장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 조성	53
제116조 탄소중립 선도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53
제117조 탄소중립 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4
제118조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54
제119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55
제120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55
제121조 정의로운 전환 기금 모집에 관한 특례	56
제122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57
제123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등 지정 특례	57
제124조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57
제125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58
제126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58
제127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특례	58
제128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59
제129조 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59
제130조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60
제131조 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60
제4장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60
제1절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	60

제132조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 우선 지원	60
제133조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61
제134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61
제135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62
제136조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62
제137조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62
제138조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62
제13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63
제140조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63
제141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63
제142조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64
제143조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64
제144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64
제145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64
제146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65
제2절	산업단지·베이벨리 조성 및 기능 강화	65
제147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65
제148조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65
제149조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66
제15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66
제151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67
제152조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67
제153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67
제154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68
제155조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68

제156조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68
제157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 종류	69
제158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69
제159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69
제160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과 지원금 특례	70
제161조 대산석유화학단지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특례	70
제3절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지원 강화	70
제162조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70
제163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70
제164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71
제16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71
제166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71
제167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71
제168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2
제169조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72
제17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72
제171조 은행 설립에 관한 특례	73
제5장 전통산업 진흥 및 해양 중심지 조성	73
제1절 농업·임업·수산업 진흥	73
제172조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73
제173조 푸드테크산업 지원 의무	73
제174조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3
제175조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74

제176조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74
제177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특례	74
제178조 농지보전부담금 특례	75
제179조 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75
제180조 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75
제181조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75
제182조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75
제183조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76
제184조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77
제185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특례	77
제186조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특례	78
제187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78
제188조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78
제189조 시험양식업 특례	79
제190조 낚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특례	79
제191조 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특례	79
제2절 지속가능한 해양 중심지 조성	79
제192조 환황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79
제193조 특별시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80
제194조 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81
제195조 개발대상섬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81
제196조 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81
제197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대한 특례	82
제198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82

제6장 특별시 공간의 계획 및 이용	82
제1절 공간이용 효율화	82
제19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82
제200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84
제201조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84
제202조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특례	85
제203조 건축에 관한 특례	85
제204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86
제205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87
제206조 도시공간재구조화 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87
제207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87
제208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88
제209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88
제210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89
제211조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례	89
제2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89
제213조 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90
제21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91
제215조 군사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91
제216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91
제217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92
제218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92
제2절 광역 교통망 등 구축	93
제21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93

제220조 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94
제221조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94
제222조 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94
제223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95
제224조 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95
제225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	96
제226조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96
제227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96
제228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96
제229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97
제230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97
제231조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98
제232조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 보조금의 사용 등	98
제233조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98
제234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99
제235조 대중교통 운영 지원	99
제236조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100
제237조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100

제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100

제1장 시민 행복 증진 100

제238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100
제239조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관한 특례	100
제240조 특별시 미래돌봄특구 지정	101
제241조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101

제242조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102
제243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102
제244조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특례	102
제245조 국립공주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례	102
제246조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103
제24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103
제248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104
제249조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특례	104
제25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지상설치 지원 특례	104
제2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104
제251조 문화예술의 진흥	104
제252조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105
제253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05
제254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06
제255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평가 특례	106
제256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106
제257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107
제258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107
제259조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107
제26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108
제261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108
제262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109
제263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110
제264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영	110
제265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110

제266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110
제267조 백제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111
제268조 특별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111
제3장 생태자원의 합리적 활용	111
제269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111
제270조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112
제271조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112
제27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112
제273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113
제274조 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	115
제275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115
제276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116
제277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	117
제278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118
제279조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적용의 특례	118
제280조 산림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120
제281조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120
제282조 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121
제283조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	122
제4장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122
제284조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122
제285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123
제286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123
제287조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123

제288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	123
제289조 산업단지 기획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123

제6편 보칙 **124**

제290조 공공기관의 협조	124
제291조 감독	124
제292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125
제293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125
제29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25

제7편 벌칙 **125**

제295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125
제296조 과태료	125

부칙 **126**

제1조 시행일	126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126
제3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126
제4조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26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대전충남특별시를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이하 “특별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경제과학 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을 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행정·재정상의 이익에 더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시의 책무) ① 특별시는 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시의 조례(이하 “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는 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특별시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장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별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운영

제1장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제6조(특별시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로 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대전충남특별시	이 항에 따라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일원 및 충청남도 일원

② 특별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사와 충청남도 청사를 활용한다.

제7조(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대전충남특별시교육감(이하 “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의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③ 특별시는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광역시의회·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대전충남특별시의회(이하 “특별시의회”라 한다)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광역시·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특별시교육감을 포

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그 관할 자치구 및 충청남도과 그 관할 시군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한다. 또한, 특별시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2장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제1절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제10조(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에 따른 입법적·행정적 조치와 지원 및 우대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제12조 규제자유화 추진, 제39조 국가의 재정지원, 제46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제49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100조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32조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 제148조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개발·해제, 제200조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287조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특별시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

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별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 추진

- 제12조(규제자유화 추진)** ① 국가는 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특별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와 시·군·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와 시·군·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시와 시·군·구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시와 시·군·구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시와 시·군·구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은 시·군·구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특별시와 시·군·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 및 시·군·구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제16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기준 등) ① 종전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특별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다음 각 목의 사무에 해당할 것
 - 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 나.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2. 해당 사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정을 고려할 것
 - 가. 특별시의 행정상·재정상 여건 및 능력
 - 나. 사무의 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입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특별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 ① 제16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예산을 이관하는 등 이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양사무의 범위 및 내용과 이양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양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특별시에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

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절 광역생활권의 지정 및 운영

제19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 관할구역내 둘 이상의 시·군·구(행정구는 제외한다)의 광역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군·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광역생활권 연합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99조 및 제201조를 준용한다.

② 광역생활권 연합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광역생활권 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와 광역생활권 연합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가 사무를 연합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광역생활권 연합의 규약 및 기관구성(규약의 내용, 기본계획,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 등을 포함), 운영(경비의 부담,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가입 및 탈퇴, 해산, 규정의 준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를 준용한다.

⑦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광역생활권 연합에 지방교부세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1장 지방의회

제21조(조례) ① 특별시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례 제정 절차, 공포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제22조(특별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3조(경비) ①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특별시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의장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의 심사를 거쳐 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특별시장에게 송부한다.

제24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운용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25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과 시·군·구의 장 소속으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6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자치행정

제1절 자치조직

제27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명으로 하되,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하는 특별시 행정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4.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등

④ 특별시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별시의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② 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직속으로 지역 소방본부를 두고 지역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역 소방본부장을 지휘·감독하

고 지역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한다.

④ 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소방본부 및 지역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절 인사운영

제30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충청남도 교육청 포함)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폐지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지방교육공무원 등 포함)은 종전의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특별시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

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⑤ 특별시장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⑥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승진임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국가와 특별시 간 인사교류) ① 특별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 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34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직원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 나.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
- 다. 주거지원비 지급
- 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2.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수준의 생활지원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절 일반행정

제35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특별시와 인접한 시·도지역에서 특별시와 관

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한다.

제36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4절 주민참여 확대

제3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특별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자치재정

제39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2. 종전의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교통 연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이 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4. 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5. 사회간접시설의 개선·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6. 국립 문화시설의 설치 및 국립 문화예술단체 분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재정지원 사항과 특별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비용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 또는 제4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적인 지원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와 시·군 및 자치구간 경비부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으로 인하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에 한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시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 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③ 국가는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제42조(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특별시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천분의 50을 특별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특별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특별시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시 설치 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매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사무를 특별시 및 시·군·구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부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양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특별시 또는 시·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 설치 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4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전충남특별시 계정 설치) ① 국가는 특별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전충남특별시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특별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별시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중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48조(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9조(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제50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와의 절차 없이 특별시의회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특별시 출범 이후 특별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인수하여야 한다.

제51조(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대해서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의 적용 조항을 면제한다.

제52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제54조(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별시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55조(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10항 및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특별시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장” 으로 한다.

- 제56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특별시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특별시장에게 한다.
-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특별시에 귀속된다. 이 경우 특별시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 ③ 특별시교육감 또는 특별시장이 「사립학교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양여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제5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58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특별시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영재학교의 설립·운영) 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19조 및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에 따라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 ③ 영재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 ④ 영재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선발 방법 및 기준은 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 ⑥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세부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 ⑧ 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 ⑨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1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

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 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② 특목고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목고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특목고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특목고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3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 내에 외국교육기관(“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교육감 또는 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교육감과 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4조(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충남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특별시장은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조, 제6조의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 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별시장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이 특별시의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국가는 특별시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특별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8조(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특별시장은 제6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69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73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위촉한다.

④ 특별시장, 특별시의회 및 특별시교육감은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임명한다.

- ⑥ 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조직·인사 및 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70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특별시장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72조(자치감사계획)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75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72조 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76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이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6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

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제1장 경제과학수도 개발에 관한 계획

제1절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7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충남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 및 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3. 경제·산업·교통·문화 등 광역통합발전에 관한 사항
4. 생활권·경제권 설정 및 광역생활권 개발·정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등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9. 지역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지역의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5. 지역의 방재방법 및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
16. 지역의 전략산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8.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9. 지역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1. 지역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2. 지역 토지·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3. 지역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4. 지역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5. 지역 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26.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7. 각종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8. 광역시설계획(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교통,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에너지공급,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9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이 제7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80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기본계획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제10조에 따른 지원위원회·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기본계획심의회) ① 제7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경제과학수도 조성 기본계획심의회(이하 “기본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된다.

③ 기본계획심의회 위원장은 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정하는 행정부시장과 기본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기본계획심의회는 당연직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특별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심의회는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81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2조(기초조사) ① 특별시장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제84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 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경관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제시행 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1.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립·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2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8.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 권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3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4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86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

고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7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8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9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자 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등의 양도·취득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제148조에 따른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

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0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1조(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충남특별시계정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특별시장은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투자유치 활성화

제9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제80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를 거쳐 대전충남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③ 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에 고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특별시조례으로 정하는 사항

④ 투자진흥지구는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⑤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특별시장은 제9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80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5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① 국가는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 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제117조 (투자진흥지구 내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교량·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특별시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8조(부담금 등의 감면)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9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① 국가와 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의 원활한 육성 및 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

제100조(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

학기술기본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항에 따라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에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혁신 관련 기업의 창업과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과학중심도시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과학중심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12. 과학중심도시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과학중심도시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15. 육성사업과 연계성을 지니는 특별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
17. 그 밖에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중심도시 육성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

⑦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특별시의 지방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⑧ 정부는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1조(중앙행정기관별 지원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1년마다 중앙행정기관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2조(특별시 연차별 실시계획) ① 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차년도 연차별 실시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연차별 실시계획 및 제4항의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특별시의 연차별 실시계획의 시행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0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성 평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하여 예비타당성대상 사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과학기술혁신 촉진 및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중심도시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79조에 의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5조(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이하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특별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된다.

②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및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의 과학기술혁신 유관기관을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이하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이라 한다)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2. 지원위원회 및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운영·지원
3. 과학중심도시의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평가·조정 등 발전 전략의 수립
4.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국내외 정책, 기술 조사 및 분석
5. 과학중심도시의 연구개발 실용화 기획·지원 및 조정 등 과학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진흥
6. 미래 성장동력 산업 과제 발굴 또는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
7.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와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07조(과학기술발전기금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매년 세출의 100분의 30을 특별시로 지원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08조(외국인 과학기술인재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 내 소재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기관과 기구에 속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9조(실증을 위한 규제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시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가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신청한 경우 특별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0조(과학기술산업 등의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산업(이하 “과학기술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특별시에서 우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1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제112조(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113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제114조(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5조(연구개발특구 재투자 특례) 특별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 시기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 조성

제116조(탄소중립 선도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충남특별시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7조(탄소중립 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특별시장은 탄소중립 도시사업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 단위 및 탄소중립 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고려 요소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LULUCF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등
2. 인구현황 분석: 주민등록 인구수, 인구밀도, 1~3차 산업 종사자 수 등
3. 도시 기본특성 분석: 도시지역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
4.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 폭염·홍수·해수면상승·가뭄으로 인한 기후재해 노출, 기후재해 민감도, 기후위기 적응능력 등

제118조(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의 탄소포집·이용·저장 및 활용에 대한 기술의 개발과 발전 및 실증, 집적화단지의 지정, 집적화단지 내 포집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9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종전의 특별시 관할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통합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특별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의 정부의 권한은 특별시의 권한으로 하고, 특별시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③ 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121조(정의로운 전환 기금 모집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는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군의 부담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정부의 보조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2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이 기금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2.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 분석
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전업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된 사업
4.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기업유치, 소상공인지원, 주민복지 등을 위한 사업

5.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6.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운영
 7.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
 8.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9.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⑥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22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3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정 특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협의를 거쳐 특별시장이 지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① 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

른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산업 육성,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5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6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해상 신·재생에너지사업(발전용량이 40MW를 초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과 그에 필요한 송전선로 및 그 부대시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한 사항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지반조사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27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 특별시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 그 점용료 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 제128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단,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9조(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특별시 내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 작성시 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1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수소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소특화단지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1조(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① 특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설비 및 시설 등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수소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설비 및 시설 등을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제1절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제132조(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 우선 지원) ①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시의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드론), 반도체, 로봇 등 국방 5대 신산업의 육성
2. 우주 방산부품·기기 산업의 육성

3. 바이오 혁신 신약·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4. 나노반도체 산업의 육성
 5. 양자산업의 육성
 6. 로봇산업의 육성
 7. 모빌리티 무선통신·자율주행 특장차 도로관리 서비스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의 선도화
 8.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산업의 육성
 9. AI·메타버스 산업의 육성
 10. 코스메틱 산업의 육성
 11.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의 육성
 1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육성
 13. 그 밖에 특별시장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 ② 정부는 제1항에 반영된 특별시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재정부장은 제132조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4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5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6조(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7조(바이오 신약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 세계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8조(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방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다. 기업 유치 및 지원

3.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산업 기술 융합 지원

나. 산업 간 협력 촉진

② 제1항 이 외에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0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 내의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3조(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에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4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6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없이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제2절 산업단지·베이밸리 조성 및 기능 강화

제147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48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인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를」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첨단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9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는 국방산업의 육성과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 관할 구역 내 국방 국가산업단지 및 관련 시설의 조성과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1. 국방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 시설
2. 국방 관련 제조업체의 입주 및 지원 시설
3. 국방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
4. 국방 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소 운영지원 시설
5. 기타 국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특별시장은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확대 조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한다.

③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특별시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한다.

제150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단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단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단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151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2조(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해 건설하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기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

토교통부장관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추진이 시급한 산업단지

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도로개선, 주차장 등)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5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인재 양성, 공간 제공, 멘토링, 비즈니스 협력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6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래첨단산업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대학·연구소·기업 간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2.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교육 및 채용
3. 취업 및 기업 지원
4. 해외 우수 기술 및 인력 유치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57조(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 종류) ① 정부와 특별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58조(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15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59조(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0조(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과 지원금 특례)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의 결정기준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1조(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특례) ①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입주에 따른 입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3절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지원 강화

제16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②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16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

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퍼센트 이하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64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퍼센트 이하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 금액의 75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 금액의 75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련하여 국가는 현금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퍼센트 이하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66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6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특별시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8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 2,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내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경우 그 절차와 체류자격,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9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의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를 특별시장이 처리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7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① 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은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 기준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1조(은행 설립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특별시 보유한도를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전통산업 진흥 및 해양 중심지 조성

제1절 농업·임업·수산업 진흥

제172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법」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시내의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특별시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3조(푸드테크산업 지원 의무)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7호, 제14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4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

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특별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6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창업 및 금융 지원),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규정된 정부의 권한 및 의무는 특별시의 권한 및 의무로 한다.

제1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① 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분은 특별시장의 행위로 본다.

제177조(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93조의 투자진흥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 면적에 대하여는 사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되 특별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8조(농지보전부담금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에 의한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9조(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농업인 기준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인 기준 상향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은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 등에 사용하여 하며, 재원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80조(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 연령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별시의 청년농어업인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1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특별시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2조(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3

항은 제외한다) 및 제8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특별시장,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며, 제9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특별시조례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 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3조(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25조의4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특별시장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4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제18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특별시의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

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86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식품산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 ③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2 제3항 전단, 제37조의13 제2항 및 제37조의15 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 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 ⑤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 제187조(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① 특별시장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8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9조(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국립수산물 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 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0조(낚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 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1조(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 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 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 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 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 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절 지속가능한 해양 중심지 조성

제192조(환황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

로 한다.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93조(특별시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를 글로벌 해양 레저관광의 중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4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 「섬발전촉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법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별시장이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특별시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4조(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섬발전촉진법」 제14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섬발전심의위
원회를 둔다.

1. 제193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의 지정
 2. 제19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제193조에 따른 사업계획
 4. 제193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 도서지역 거주민의 복리향상과 글로벌해양레저도
시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특별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95조(개발대상섬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의
개발대상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6조(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 섬발전 및 글

로별국제해양레저도시 육성을 위해 「섬발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섬진흥원 분원을 특별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섬 개발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유치를 위한 집적단지과 교육시설, 휴양·편의시설, 주거시설 등을 갖춘 지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97조(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때, 특별시장이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생태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 생태공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은 고려된 것으로 본다.

제19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국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해양레저관광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특별시 공간의 계획 및 이용

제1절 공간이용 효율화

제19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승인·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

회 심의로 갈음한다.

③ 특별시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9조제2항(제1호 제외),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항,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

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0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훼손지복구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된 보전부담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01조(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① 특별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5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를 조성하는 경우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② 특별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4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진입로 설치의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제202조(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특례) 특별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1호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203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6항·제7항,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 제70조제2호·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제71조 제7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특별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7.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04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제외), 제11조제2항 후단, 제11조의2제4항, 제32조제6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민·관 공동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민간 이윤율 초과분은 「도시개발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역내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제205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대전충남특별시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6조(도시공간재구조화 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한다.

제207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8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 주거기본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9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6조 및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7조의2, 제17조, 제31조,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지 않는 경

우의 심의는 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 제210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211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 ②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5항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한다.

- 제21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

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36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5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3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 제5항 및 제91조의3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내 결정한 지명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14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특별시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5조(군사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특별시장 및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6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①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

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특별시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18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특별시 또는 관할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2절 광역 교통망 등 구축

제21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는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는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제220조(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에 연계되는 도로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2에서 지정받은 광역도로
3. 「도로법」 제8조에서 지정받은 혼잡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에 드는 비용은 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2 및 「도로법」 제8조에 따른 5년단위 시행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9조에 따른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1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국가는 제19조에 의한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특별시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1.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관광지 간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2. 특별시의 서해안 및 동·남·북부권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망 구축을 위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3. 종전의 대전광역시 외곽 순환 고속도로

제222조(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의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 관련해 지역소멸 분포 등을 감안한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사업
2.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사업

제223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특별시는 고속도로건설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4조 (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5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 특별시 내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를 말한다) 및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 된 경우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제2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에 따른 전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별시내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도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특별시 내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에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8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내 일부지역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용 심의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은 특별시 내 유상운송 허용과 관련 예외로 둔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6조(청문),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8조(과징금 처분)는 특별시 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준용한다.

제229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제9조(운송약관),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제4조,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 제2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3항, 제18조제1항, 제2항, 제20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제7항 내지 제13항, 제22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제2항, 제8항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된 사항은 특별시조례 및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0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 등),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의 신고 등),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요금),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의 준용규정은 동법에 그대로 준용한다.

제231조(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플랫폼 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2.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2조(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231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231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1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3조(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① 특별시 내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운임·요금을 정한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234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인용조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특별시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제235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해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버스·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의 적자, 무임승차 및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 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

제236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
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 교
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을 하여야 한다.

제237조(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도 불구
하고, 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따라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
생하는 수입금은 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
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③ 국가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특별시로 이관하는 경우, 국가도로철도망 계획에 따
른 국비투자 계획과 관할 구역 내의 수입금을 추계하여 그 규모를 상호 비교하여
야 한다. 또한, 국도 및 철도 관리청의 지자체 이관이 필요하므로, 관할 구역 내
도로철도망의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도 추계하여 유리한 방
향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조례로 특별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을 신설·운용한다.

제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제1장 시민 행복 증진

제238조(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
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9조(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저출생 대응

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기금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00분의 3을 매년 특별시에 포괄 보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기금법」 제23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금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3. 특별시의 일반 회계에서의 출연금
4. 기부금 및 후원금
5.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제240조(특별시 미래돌봄특구 지정) ① 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미래돌봄특구(이하 “미래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41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시설 확충

② 국가는 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2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전충남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 청년창업기업 지원
3.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 국가는 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3조(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 소재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고시된 시·군·구에 지방의료원을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4조(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특례) 특별시에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예외로 한다.

제245조(국립공주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내 의료사각지대에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공주의과대학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주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6조(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은 특별시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의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1호를 배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의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전통시장

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특별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②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 내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48조(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249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특례) 정부는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10년간 감면하여야 한다.

제250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지상설치 지원 특례)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 내 전용주차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 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251조(문화예술의 진흥) ① 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예술의 발굴·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시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국가는 특별시 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국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252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① 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제13조의4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 전담 기관과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과 문화도시 지정시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3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4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5조(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평가 특례) ① 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같은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특별시에서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 설립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전단·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단서,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전문체육시설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립을 타 지자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7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8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78제1항제28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84조·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259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지역은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제8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 제1항·제4항·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 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1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특별시장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투자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기준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⑤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62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전충남특별시 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3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특별시의 출연금

2. 제3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전충남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264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영)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65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대전충남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제266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① 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7조(백제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는 특별시가 백제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이 개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공연·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 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백제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에 국립문화시설 및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268조(특별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에 따른 지원 시, 특별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스포츠법」 제8조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동법 제8조제6항, 제10조제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이스포츠법」 제4조,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생태자원의 합리적 활용

제269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① 특별시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특별시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0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제271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7조,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2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73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279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제28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흥지구를 지정한다.
 - ③ 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가와 특별시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81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⑧ 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⑨ 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8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⑩ 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

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4조(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전에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진흥지구개발계획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7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76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77조(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① 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7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276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274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78조(산림이용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9조(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에 적극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정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④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⑤ 특별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

설

⑥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⑦ 사업시행 절차 중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준공검사는 제229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⑧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70조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또한 인·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280조(산림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1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280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③ 이 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과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 제20조,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사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제282조(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갯벌 및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충남특별시에 갯벌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1. 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정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283조(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

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의 갯벌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제284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285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① 국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6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287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된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개발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특별시 관할 구역에 혁신도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8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289조(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신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성면적의 25% 또는 산업시설용지면적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특구 지정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편 보칙

제290조(공공기관의 협조) ① 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91조(감독) ① 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2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3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시인사위원회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편 벌칙

제295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75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296조(과태료) ① 제289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특별시가 승계한다.
② 특별시 설치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명의를 특별시의 명의로 보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 불구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소관 공유재산은 일괄 등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기수수료는 면제한다.